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7.(화) 08:00 |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 (지 면) 2026. 11.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시도교육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역할을 강화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6.5.19. 공포, '26.11.20.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 (특수외국어)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라 아랍어, 힌디어, 카자흐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등 총 53개 언어를 규정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차·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도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를 통한 언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이주배경

학생 지원 업무를 ▲학교·교육청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역·번역 지원,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연계 및 관련 제공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언어 지원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교육부 장관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지정

셋째,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활용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도교육감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에 배치·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규정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설치·운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안웅환 (044-203-6752)
		담당자	사무관	이지윤 (044-203-67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며,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앞으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전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점검·평가를 받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역·번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업무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원에 대한 특수외국어 학습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6.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수립하여야”를 “각각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감의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감은 통보받은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및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특수외국어의 통역·번역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운용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교

육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외국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②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센터에 배치·운용해야 한다.

1. 교육센터의 규모 및 운영 상황

2. 특수외국어 교육·지원수요 및 전망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및 전망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교육센터에 배치하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축 지원

제8조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6.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결과의 통보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수립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 ---------- 각각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신 설>	③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감의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감은 통보받은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⑥ ---------- 제4항 및 제5항----------.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및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특수외국어의 통역·번역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운용
<신 설>	제7조의2(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외

	국어 통역·번역 지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외국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②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센터에 배치·운용해야 한다. 1. 교육센터의 규모 및 운영 상황 2. 특수외국어 교육·지원수요 및 전망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및 전망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교육센터에 배치하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축 지원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신 설>	제8조(권한의 위임)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4.·5.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의 통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757